

의안번호	제 565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2월 13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5
----------	-----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3일  
발의자 : 이광진, 임순목, 강현삼,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황규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나. 기금의 회계관련 관계법령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 '17. 2. 6. ~ '17. 2. 12.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8조제2항”을 “법 제6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지사는 영 제74조제6호”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담당실정”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제96조”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제75조 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u>」 제75조제5항----- ----- -----.</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u>법 제68조제2항</u> 및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 <u>법 제68조제3항</u> ----- -----.</p>
<p>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 <u>도지사는 영 제74조제6호</u>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④ (생략)</p>	<p>제5조(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등) ①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 제74조제8호</u>----- -----.</p> <p style="padding-left: 20px;">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u>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u>」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제6조에 따라 <u>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p>제7조(회계공무원) ① ----- ----- -----.</p>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정

2. · 3.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 담당실장

2. · 3.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

##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

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7.1.6.>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1.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 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6.11.1., 2017.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2017.1.6.>

[전문개정 2010.12.7.]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